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관외 장
람	

제35호(호외) 2021. 9. 6.(월)

**공 고**

광양시 공고 제2021-1690호 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 
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..... 1

**기 타**

광양시 보건소 공고 제2021-11호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안 입법예고 ..... 16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1944, 행정 1945)



광양시 공고 제2021 - 1690호

「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6일

## 광 양 시 장

### 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취지

- 「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일부 개정 시행 및 현행 투자보조금 기준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시행규칙명 변경 및 소제목 신설
- 현행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 기준인 고용인원 10인으로 변경 (제9조)
- 보조금 지원 전 채권확보 조치 신설 (제13조의2)
-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 지원기준 신설 (제13조의3)
- 투자기업 보조금 의무기간 축소 (제4조, 제14조)

3. 개정 시행규칙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9. 6. ~ 9. 26 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6일까지 광양시장(참조 : 투자일자리과, 전화 : 061-797-2815, FAX : 061-797-4192, E-mail : lullu99@korea.kr)에 전화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의견)
- 성명(단체명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 
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(신·구조 대비표 포함) 각 1부.  
끝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치법규명 : 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  - 주 소 :
  - 연 락 처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# 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

## 일부개정 시행규칙안

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”을 “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1장 총칙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“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”를 “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5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」 제6조제1항에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이”로 한다.

제2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2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4항 중 “10년”을 각각 “사업개시일부터 5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

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국내기업 지원

제9조 중 “20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한다

제10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“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”을 “시설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3항 중 “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입지보조금·건축비·시설장비구입비·기반시설 설치비 등”을 “제2항제1호에 의한 입지보조금”으로, “1년이내“를 “2년이내“로,

“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”은 “제2호에서 제4호에 의한 시설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”으로,

“별지 제10호 내지 제13호서식에 의거”를 “별지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4항제3호 중 “제60조”를 “제69조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5항 중 “투자보조금“을 “시설보조금“으로 한다.

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4장 보칙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 (채권확보)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.

제13조의3 (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)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의 50%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4항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10년”를 “5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사유발생 6개월이내에”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붙임 1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광양시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수도권”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<u>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」 제6조제1항에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3조(투자유치협의회 운영) ① <u>광양시투자유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</u></p>	<p><u>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</u>」이 -----.</p> <p><u>제2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⑤ 협의회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,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회의일시 및 장소</u></li> <li><u>2.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</u></li> <li><u>3.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</u></li> <li><u>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</u></li> <li><u>5. 의결사항</u></li> <li><u>6. 기타 중요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⑥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</u></p>	







현행	개정안
<p>⑤ 수도권기업의 시내 이전으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14조(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) ① ~ ③ (생략)</p>	<p>⑤ ----- -----<u>시설보조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보칙</u></p> <p><u>제13조의2 (채권 확보)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채권 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3조의3 (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)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의 50%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4조(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<u>10년</u>을 말한다. 이 경우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<u>10년</u>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6조(자본유치 실적보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성과금을 받고자 하는 자(기관, 단체 포함)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작성하여, <u>사유발생 6개월이내</u>에 시장에게 성과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④ ----- -----<u>5년</u>----- ----- -----<u>5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, 제 )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□ **국민건강보험법**

○ 제69조(보험료)

-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.

□ **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**

○ 제24조 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

-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·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**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**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1. 11.>
-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·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**사업개시일**부터 **5년 이상**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6. 7. 27., 2020. 11. 11.>

#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『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6일

광 양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금주구역 지정·관리 업무 주요 변경사항 관련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신설 및 개정 기타 항목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1. ○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(조례 제13조)

- 제13조 신설 :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

### ○ 기타 일부 용어 및 정의 미비한 점 정비

- 조례 제1조와 제2조 “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수정, 조례 제2조의 “지역 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수정

- 조례 제2조, 제4조, 제10조 내용 중 “음주청정구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수정
- 조례 제2조제4호 “음주문제자”의 정의 추가
- 조례 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)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“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”을 “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”으로 수정, 제5호 “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”을 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”로 수정
- 제8조 제1호 및 제2호 “알코올 사용장애인”을 “음주문제자”로 수정
- 조례 제11조(주민의 참여)와 제12조(시민단체 등 참여) 내용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, 제11조(시민의 참여 등)로 통합 수정

### 3. 개정 조례안: 별첨

### 4. 예고기간: 2021. 9. 6. ~ 9. 26.(20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광양시장(참조: 건강증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의견 제출 사항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다. 의견 제출 방법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
## ○ 의견 제출할 곳

가. 주 소: 우)5774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,  
광양시보건소(건강증진과)

나. 전화번호: 061)797-4037

다. 팩 스: 061)797-4056

라. 전자우편: bshun0507@korea.kr

※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붙임 1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.

2.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안 1부. 끝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『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 
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##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“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“지역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2조, 제4조, 제10조의 내용 중 “음주청정구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음주문제자”란 알코올의존증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“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”을 “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“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”을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”로 한다.

제8조 제1호 및 제2호 “알코올 사용장애인”을 “음주문제자”로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통합한다.

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에 시민, 단체,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민·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와 사회적·정신적 피해와 사회적·경제적 손실로부터 <b>주민</b>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<b>주민</b>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1.“건전한 음주문화”란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<b>주민</b>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고 음주폐해로부터 <b>지역주민</b>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</p> <p>3.“<b>음주청정지역</b>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<b>음주청정지역</b>의 지정) ① 광양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<b>음주청정지역</b>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<b>제2조</b>에 따른 도시공원</p> <p>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</p> <p>3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에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와 사회적·정신적 피해와 사회적·경제적 손실로부터 <b>시민</b>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<b>시민</b>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1.“건전한 음주문화”란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<b>시민</b>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고 음주폐해로부터 <b>시민</b>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</p> <p>3.“<b>금주구역</b>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4.“<b>음주문제자</b>”란 <b>알콜의존증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.</b></p> <p>제4조(<b>금주구역</b>의 지정 등) ① 광양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<b>금주구역</b>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<b>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</b></p> <p>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<b>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</b></p> <p>3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</p>

<p>따른 어린이 놀이시설</p> <p>4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</p> <p>5. <u>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</u>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p> <p>②시장은 <u>음주청정지역</u>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<u>음주청정지역</u>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음주폐해로부터 보호)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알코올 사용장애인</u>에 대한 선별, 상담,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</li> <li>2. <u>알코올 사용장애인</u>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</li> </ol> <p>제11조(주민의 참여)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<u>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</u>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<u>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2조(시민단체 등 참여)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<u>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·관이 협력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4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</p> <p>5.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제2조에 <u>따른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</u>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p> <p>②시장은 <u>금주구역</u>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<u>금주구역</u>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음주폐해로부터 보호)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음주문제자</u>에 대한 선별, 상담,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</li> <li>2. <u>음주문제자</u>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</li> </ol> <p>제11조(시민의 참여 등) 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<u>자발적 참여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에 <u>시민, 단체,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민·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1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시장은 <u>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</u></p>
---	---